

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(안)

의안 번호	70 호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12.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정이유

-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 능력이 없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
-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코자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
- 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법인격 및 명칭을 정함 (안 2조)
 - 법인격 :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치
 - 명 칭 : 재단법인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
- 조합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(안 5조)
- 조합에서 수행할 사업을 재산의 관리, 신용보증,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증합관리, 기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무로 함(안 7조)
- 조합의 설립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, 건물, 자금을 출연 할 수 있도록 함 (안 8조)
- 재산으로 출연된 출연금은 중소기업의 등록차트에 대한 보증 및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에 사용하고 타용도 사용시 회수도록 규정함 (안 9조)

-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을 경우 조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재 보증계약을 체결 체결토록 함 (안 10조)
- 매 사업 연도에 발생되는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잔여 액은 기본재산 확충에 사용토록 함 (안 11조)
- 조합의 경영상황에 관한 평가 및 감사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(안 13조, 14조)
- 조합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충청북도에 귀속하도록 함 (안15조)

□ 관계법규

- 민법 (제32조, 제45조)
- 지방자치법 (제15조)
- 중소기업기본법 (제2조)
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(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)
- 은행법 (제2조, 제 7조)
- 지방재정법 (제14조), 지방재정법시행령 (제24조)
-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(제2조,제9조)
- 신용보증기금법 (제2조, 제23조의2)
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(제19조의2)
- 득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(제9조, 제14조)
- 기술개발촉진법 (제8조의3),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(제14조)

□ 조례안 : 따로붙임

□ 관계법규 발췌문 : 따로붙임

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인의 설립 및 명칭) 조합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(이하“조합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중소기업”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.
2. “재산”이라 함은 조합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 출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.
3. “신용보증”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채무를 조합이 보증함을 말한다.
4. “중소기업의 채무”라 함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다음각목의 채무를 말한다.
 - 가.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, 금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
 - 나. 중소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
 - 다. 기타 중소기업의 금전채무 중 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정하는 금전채무
5. “금융기관”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은행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
 - 나. 한국산업은행

- 다. 중소기업은행
- 라. 한국수출입은행
- 마.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
- 바.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
- 사.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

제4조(사무소)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소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재산) 조합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6조(정관)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 2. 명칭
 3. 사무소의 소재지
 4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 5.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 6. 조합의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
 7. 조합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
- ②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제7조(사업) 조합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

1. 재산의 관리
2. 신용보증
3.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종합관리
4.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하여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

제8조(출연) 도지사는 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토지, 건물,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 할 수 있다.

제9조(출연금의 사용) ①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출연금은 다음 각 호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조합의 정관,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
 2. 기타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본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도
- ② 조합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도지사는 타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

제10조(재보증 계약) 조합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을 경우 그 신용보증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재보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11조(이익금의 처리) 매 사업년도의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의 보전 및 기본재산의 확충에 사용한다.

제12조(회계년도) 조합의 회계년도는 충청북도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

제13조(경영평가)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합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련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14조(보고 및 감사 등) 도지사는 조합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5조(잔여재산의 귀속) 조합이 해산할 경우에 그 잔여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귀속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